## 「평창군 청・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2. 29(화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- O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O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 한왕기)

○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·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고,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·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- O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
  -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기준, 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를
  - 안 제8조는 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청·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,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인력확보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부.

#### 평창군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용정책 기본법」및「강원도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」에 따라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·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
  - 1. "청·장년"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,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.
  - 2. "정규직 신규채용"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,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- 3. "대상기업"이란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공모하는 청·장년 일 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 다.
  - 4. "고용대상자"란 군에 주소를 둔 청·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.
  - 5. "일자리 보조금"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군내 청·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  - 1. 청·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
  - 2.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

- 3. 일자리 보조금 지원
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제4조(보조금 지원기준 등)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 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,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,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.
  -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·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있다.
- 제5조(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)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(배점기준)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하고, 강원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 다)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**제6조(예산집행)** ① 군수는 대상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. 다만,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7조(사후관리)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  - ③ 군수는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8조(지원금의 반환 등)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 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

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한 기업에게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.
-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보조금 분담)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자리보조금의 60퍼센트를 분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